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mnslove@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